

 		<h1>보도자료</h1> <p>2020. 1. 21.(화) 배포</p>	
보도일	<p>2020. 1. 21.(화) 09: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 21.(화) 09:30 이후 보도 가능</p>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지은 (☎ 044-203-6445) 사무관 김효라 (☎ 044-203-6497)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 044-203-6877) 주무관 주상철 (☎ 044-203-6546)
	반부패청렴담당관		과 장 엄진섭 (☎ 044-203-6231) 사무관 이민영 (☎ 044-203-6092)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과 장 박재성 (☎ 044-203-6660) 교육연구사 이윤호 (☎ 044-203-6662)

교육부,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13.(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후속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3법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 우선,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제30조의2)하여야 하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시정명령·정원감축 등(제30조), 운영정지·폐쇄명령(제32조)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제19조의3)하여야 하므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제19조의4)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대상, 방법, 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치원 3법’은 '20년 1월 말 공포 예정이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

- 새 학기 시작(3월)에 대비하여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였다.

-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하였으며, 폐원 세부요건** 및 절차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쇄예정연월일·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예시) 학부모 동의,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을 포함

- 또한,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 위치 변경인가는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임

-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28조의 2를 위반하여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부과(「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2)

[에듀파인 현장 안착 지원]

-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해부터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원격지원 등 상시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 일반 회계업무 중심으로 교육 후, 에듀파인 사용기능 중심 교육으로 전환
- ※ 17개 시도 대표 강사(337명) 및 자문단(1,302명)이 에듀파인 운영 지원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교육 분야는 유치원부터 대학, 평생교육 등 국민 대다수가 이해관계자이고, 지난 2019년에는 3만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관심이 매우 높아 다른 민원에 비해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 이에 교육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민원처리]

-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교육민원 3·3·3운동’* 지속 전개 및 모든 민원은 부서장 이상이 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민원서비스와 부서평가**의 연계를 강화하며,
- * (3신) 신속 이송·접수·답변 (3총) 총실 답변·결재·회신 (3적) 적극 홍보·교육·코칭
- ** 기피 민원 등에 대한 부서 협업정도 등 신설, 민원 처리 관련 부서평가 배점 비중 확대
- 민원처리 법령 위반 등 불성실한 업무담당자는 경고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민원 행정]

-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국민신문고내에 사립대학 민원을 직접 신청하고 해당 대학으로부터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범 운영 할 계획이며,

- 민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활용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채택된 의견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민원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 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부서장이 민원 처리 상황과 불만족 내용을 정기점검하며,
-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상·하반기 부총리 표창 및 성과급에 반영 등 사기를 진작하고, 이들의 고충 치료를 위해 시도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 지난해 12월 18일(수)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사학혁신방안은 총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 13개, 법률개정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시행령 등 행정입법은 1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도 행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
·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 사립대 상시감사체제 구축
· 적립금 공개 확대	·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 감사결과 공개 확대
·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 친족 관계 교직원 수	· 사학 관련 부서 인사운영 개선(완료)
·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 친족 관계 공시	

-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아울러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학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민원이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유치원 3법 개정 전후 비교표
 2.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3. 학교급식법 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4. 사학혁신 추진방안 이행점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② (생략)</p> <p>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생략)</p> <p>④ (생략)</p> <p><u><신설></u></p>	<p>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인 경우</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u></p> <p>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p> <p>2.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호의 <u>정신질환자</u></p> <p>3.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의 <u>마약류에 중독된 사람</u></p>

현행	개정안
	<p>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p> <p>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p> <p>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9조(평가) ①·② (생략)</p> <p><신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p>지 아니한 사람</p> <p>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8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p>

현 행	개 정 안
<p>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p> <p>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 -----<u>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u>----- ----- -----<u>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 ----- ----- -----<u>두어야 한다.</u>-----<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생략)</p> <p>② 교직원 등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p>	<p><u>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u></p> <p>4.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u>----- -----.</p> <p>제28조(<u>보조금 등의 반환</u>) ① ----- -----<u>다음</u>----- ----- -----<u>보조금·지원금의</u>----- -----.</p> <p>1. -----<u>보조금·지원금을</u>-----</p>

현 행	개 정 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보조금을</u> 지급받은 경우	2. ----- <u>보조금·지원금을</u> ----- --
3.·4. (생략) ②·③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생략)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또는 <u>재정지원 배제 등의</u> -----.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u>에 한하여 공표한다.</u>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생략) ②·③ (생략)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 ----- ----- ----- ----- ----- ----- ----- ----- ----- ----- 1. ----- -----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을-----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붙임 4

사학혁신 추진방안 이행점검(5개 분야 26개 과제, 33개 세부과제)

- ①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 ②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③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
④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⑤ 교육부 자체 혁신

①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13개)

분야	연번	추진 과제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추진 현황	담당자
①	1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교육기관정보 공개법 시행령 (제14호)	총장→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	입안 ('20.1.)	사립대학 정책과 사무관 박현득 (6933)
	2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기준 강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9조의2)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등	입안 ('20.1.)	
	3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 확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용도 미지정 기부금 등 교비회계로 처리	입안 ('20.1.)	
	4	적립금 공개 확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운용계획서 공개	규제심사 중 ('20.1~)	
②	5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3월간→1년간	입안 ('20.1.)	사립대학 정책과 사무관 김영현 (7092)
	6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교육기관정보 공개법 시행령	친족 관계 교직원 수	입안 ('20.3.)	
	7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친족 관계 공시	규제심사 중 ('20.1~)	
	8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설립자, 친족 등 제외	입안 ('20.1.)	
③	9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원 채용 시 채용규모 사전협의	입안 (교육청 협의 중)	교원양성 연수과 사무관 최지웅 (6467)
⑤	10	사립대 상시감사체 구축	-	종합감사 확대 등 ('19년 6교→'20년 10교)	'20년 사립대 감사계획 수립 중	사학감사 담당관 사무관 조준영 (6337)
	11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	감사처분양정기준 및 행정제재기준 (지침)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및 행정제재 수준 강화	감사처분 양정기준 제정('20.1.) 및 행정제재기준 개정('20.3.)	
	12	감사결과 공개 확대	-	요약→전문공개	'19종합감사 결과부터 공개	
	13	사학 관련 부서 인사운영 개선	교육부인사운영 규정(훈령)	사학관련 정책-감사부서 간 인사이동 제한	< 완료 >	

2 법률 과제 (20개)

분야	연번	추진 과제	관련 법	주요 내용	담당자
1	1	적립금 공개 확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에 학생·교직원 참여 확대	사립대학 정책과 사무관 박현득 (6933)
	2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사립학교법 (제31조)	회계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장관이 회계감사기관 지정	
2	3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사립학교법 (제14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사립대학 정책과 사무관 김영현 (7092)
	4	비리임원 복귀 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	사립학교법 (제22조)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5	초중등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근거 마련	사립학교법 (제43조의3)	재정결할 지원 기관의 재정진단 및 평가	학교혁신 정책과 서기관 이상범 (6441)
	6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직원 공개 채용	
	7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의결정족수 '초과' 임원취임승인취소에서 '이상'으로 하고,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소송비 지원 추가	사립대학 정책과 사무관 김영현 (7092)
3	8	교육청의 교직원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54조의4, 제58조의3, 제62조의3, 제66조의2, 제67조, 제74조)	교육청에 교직원 징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원 정책과 사무관 정지은 (6940)
	9		사립학교법 (제54조)	직원 제재 수단 마련	학교혁신 정책과 서기관 이상범 (6441)
	10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	사립학교법 (제72조의3)	정관 등에 자체 행동강령 마련	
	11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34조)	자문→심의로 격상	지방교육 자치강화 추진단 정책 협력팀 사무관 장영희 (7087)	
1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분야	연번	추진 과제	관련 법	주요 내용	담당자	
4	13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 심사 강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10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교원 정책과 사무관 정지은 (6940)	
	14	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	사립학교법 (제2조, 제61조, 제66조)	정직-보수전액 감액		
	15		사립학교법 (제2조, 제61조, 제66조)	강등 처분 신설		
	16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	사립학교법 (제59조)	국공립 교원과 같이 3년 보장		
	17	사립교원 휴복직승인권 학교장 위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고등학교이하로 확대	교원 정책과 사무관 안중호 (6489)	
	18	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	사립학교법 (제53조의6)	국공립학교 등 파견	교원 정책과 연구관 박재원 (6689)	
	5	19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인사혁신처 소관]	사립초중고 및 법인	운영 지원과 사무관 김규년 (6508)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20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별표1] [권익위 소관]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대상법률에 포함	사립대학 정책과 사무관 김영현 (7092)	